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22일,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 2) 회부일자 : 2026년 1월 22일
- 3) 상정일자
 -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2. 5.)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종익 의원)

1) 제정이유

-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파크골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윤)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포항시 확장계획에 대응하여,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
- 포항시에는 현재 4개소 108홀의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총 10개소, 279홀 규모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